P - 71 - 2012

건조설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재현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희

개정자 : 한 우 섭

○ 제·개정 경과

- 1994년 3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1994년 4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1995년 9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재심의
- 1996년 4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5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11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ㅇ 관련규격

- NFPA 86: Standard for ovens and furnaces
- BS 5410 : Code of practice for oil firing; Part 3 Installations for furnaces, kilns, ovens and other industrial purposes
- FM: Industrial ovens and dryers
- KS B 6110(2003) 공업용 연소로의 안전 통칙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7월 18일

개정권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_ _

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80조 내지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건조설비의 설치·제작·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조설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화재·폭발 등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에서 규정한 건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진공 건조설비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연소실"이라 함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 등을 점화·연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공간을 말한다.
 - (나) "건조실"이라 함은 피건조물이 건조되는 공간을 말한다.
 - (다) "덕트(Duct)"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연소가스 또는 피 건조물의 건조시 발생하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한 도관을 말한다.

P - 71 - 2012

- (라) "댐퍼 (Damper)"라 함은 덕트 내에 설치되어 연소용 공기, 연소가스 또는 건조 시 발생되는 가스·증기·분진 등이 함유된 유체 흐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.
- (마) "간접가열식 건조설비"라 함은 연료의 연소가스가 건조실 내부로 들어 가지 않고 복사 또는 열교환 등 간접방식으로 건조하는 건조설비를 말한다.
- (바) 연소식 건조설비"라 함은 연료의 연소가스가 건조실내부를 통하여 피건조물 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건조설비를 말한다.
- (사) "폭발구"라 함은 건조실 내부 압력 상승시 내부 압력을 외부로 안전하게 분출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. 창문 또는 판넬 등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 안전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건조설비의 구조

건조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로 설계·제작되어야 한다.

- (1) 건조설비는 불연성 재료로써 최대운전 온도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 딜 수 있도록 설계·제작되어야 한다.
- (2) 건조설비는 건조설비의 외부표면온도가 70 ℃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·제작 되어야 한다.
- (3) 연소실에는 각 버너 마다 연료의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구(Peep hole)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건조실의 출입문은 건조실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5) 연소실은 충분한 환기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6) 점화 할 때는 문을 열고 점화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.
- (7) 연도는 통풍이 잘 되고, 폭발의 도피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P - 71 - 2012

(8) 강우, 침수 및 적설 등으로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5. 덕트

건조설비의 덕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제작 · 설치되어야 한다.

- (1) 덕트는 운전온도에 적합한 내열성 및 불연성 재료로써 배기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- (2) 덕트 외부표면 온도가 70 ℃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덕트 접촉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3) 덕트가 가연성 재질의 벽, 바닥 또는 지붕을 통과하는 경우, 배기덕트에는적절한 단 열조치 또는 틈새를 두어 덕트가 통과하는 구조물의 표면온도가 70℃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배기덕트 배출구는 건조실의 출입문, 창문 또는 공기흡입구 등과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 설치하여 건조 과정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건조실 및 실내작업장 내부로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배기덕트의 배출가스에 분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덕트내의 분 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청소구(Clean door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6. 댐퍼

- (1) 공기공급 덕트 및 배기가스 덕트에 설치된 풍량 조절용 댐퍼는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설계·제작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공기가 연소실 내부로 유입되거나 또는 배기 가스가 건조실 외부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자동으로 작동되는 댐퍼는 건조설비 이상 운전시에도 최소한의 개구부가 유지되도 록 기계적인 장치 등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.

7. 가연성가스의 제거

(1) 가연성가스 · 인화성물질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외부 연소식 건조설비 및 간접가

P - 71 - 2012

열식 건조설비는 점화전 또는 재점화전 가연성가스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기휀 등으로 최대유량의 50% 이상이고, 연소실 내부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후 연료를 공급·점화하여야 한다.

(2) 건조과정중 피건조물로부터 가연성가스,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증기가 발산되는 건조설비는 운전중단 기간중 가연성가스,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증기가건조실 내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건조설비 가동 또는 재가동전 배기휀 등에의하여 건조실 내부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한 후 열원을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건조물 또는 공정 특성상 공기중의 산소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질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건조실 내부를 환기한다.

8. 배기설비 등

- (1) 건조과정중 피건조물로 부터 가연성가스,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증기가 발산되는 건조설비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적절히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강제적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배기설비는 건조실내의 가연성가스 농도가 항상 폭발하한계의 25%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·운전되어야 한다. 다만, 건조실내에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및 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·조절하다가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경보를 울리며 배기설비를 제외한 건조설비의 가동이 모두 정지되는 등 폭발하한계의 50%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3) 기체연료 및 액체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외부 연소식 건조설비 및 간접 가열식 건조설비는 연소용 공기 공급휀 또는 배기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.
- (4)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건조실의 급·배기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기 히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.
- (5) 연소실과 건조실은 운전중 유해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음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.

9. 온도조절 및 경보장치

(1) 안전보건규칙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실에는 온도조절장치 및 온도경보장치

P - 71 - 2012

를 설치 하여야 한다.

(2) 온도조절용 온도감지기는 열원 긴급차단용 온도감지기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0. 긴급차단장치

- (1) 기체연료 및 액체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건조설비의 이상시 자동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공기흡입휀, 배기휀 또는 순환휀 고장
 - (나) 건조실내의 온도이상 상승
 - (다) 전기공급 중단
 - (라) 불꽃감지기(Flame detector) 작동
 - (마) 제어용 전원 또는 압축공기 차단
 - (바) 연료공급 중단
- (2) 전기·스팀 또는 열매유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건조설비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건조설비의 이상시 자동으로 전원·스팀 또는 열매유 등이 차단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건조실 내의 온도이상 상승
 - (나) 배기 또는 순환휀 고장
- (3) 긴급차단밸브는 바이패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.
- (4)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버너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권장한다.
- (5) 기체연료 배관에 설치한 긴급차단밸브는 연료의 누설시험을 위하여 긴급차단밸브 다음에 차단밸브를 설치하고, 사이에 시험 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1. 폭발구

(1) 안전보건규칙 제2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설비에는 폭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.

P - 71 - 2012

- (가) 폭발구의 최소 면적은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.1 m³ 당 1 m² 가 되도록 한다.
- (나) 폭발구의 작동압력은 건조설비의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압력 0.48~ 0.96kPa(0.0048~ 0.0096kg/cm²)로 한다.
- (2) 건조설비의 폭발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 건조설비 주위의 근로자를 보호하여 야 한다. 또한 폭발구 주위에는 배관이나 제어반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폭발구의 유효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2. 컨베이어

공기공급휀 및 배기휀 등의 고장시, 피 건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건조설비에 설치된 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.

13. 버너 구조 및 기능

- (1) 버너는 사용하는 연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(2) 버너는 사용조건에서 안정된 화염을 유지하는 구조이거나 버너 타일을 두어야 한다.
- (3) 버너는 적당량의 공기가 공급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4) 버너는 화염을 정확하고,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기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버너에는 점화용 버너 및 점화용 전극 등의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하거나 확실한 점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점화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점화용 버너는 메인 버너에 점화하였을 때 그 메인 버너의 연소용 공기 흐름 등으로 화염이 꺼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7) 점화용 버너는 메인 버너에 확실하게 점화시키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점화용 버너는 연소상태를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오일 버너는 필요에 따라 연소 정지 후 남은 연료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P - 71 - 2012

- (10) 연료의 자연발화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연소실 및 자주 점화하는 메인 버너에는 점화용 버너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연료의 자연발화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연소실 및 자주 점화하는 메인 버너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2) 여러 개의 메인버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메인 버너 마다 점화장치와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14. 연료 배관

- (1) 연료 배관 및 부속설비는 과열 또는 파손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.
- (2) 연료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의 1.5배 이상의 압력 및 온도에 견디고, 연료 등의 특성 및 사용 상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- (3) 연료 배관 등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공기 또는 연료가 역류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연료 배관 등에는 연료의 팽창 등으로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토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연료 배관 등에는 등전위 접지를 하여야 한다.
- (7) 연료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벤트밸브,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연료 배관 등에는 진동 및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플렉시블 호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연료 배관 등의 밸브는 개폐의 정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와 점검 및 보수 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